

반복되는 온라인 괴롭힘, 어떤 법으로 막아야 하나

김주연 법무법인 시화 변호사

1. 들어가며

그간 유튜브나 SNS상의 악의적 영상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다루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는 여전히 중요한 법적 장치다. 다만 최근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단순히 평판 침해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생활 안정과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스토킹범죄로도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명예훼손·모욕과 스토킹범죄의 경계와 차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온라인 괴롭힘, 스토킹처벌법은 어떻게 정의할까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은 2021년 제정되어, 기존의 경범죄 수준에 머물던 스토킹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를 목적으로 마련된 특별법이다. 특히 디지털 기술과 온라인 플랫폼의 발달로 인해 새로운 형태의 스토킹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오프라인뿐 아니라 온라인 공간에서도 개인의 안전과 프라이버시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했다.

법 제2조는 “스토킹행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정의한다. 구체적으로 여러 유형의 행위를 열거하고 있는데, 온라인 환경과 밀접하게 관련된 조항으로는 (다)목, (바)목, (사)목을 들 수 있다.¹⁾

(다)목은 정보통신망이나 통신수단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글, 말, 그림, 영상, 화상 등 다양한 형태의 내용을 도달하게 하거나 나타나게 하는 행위를 스톱킹으로 규정한다. 유튜브, SNS, 메신저 등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원치 않는 글이나 영상을 게시하거나, 댓글·태그·멘션 등을 통해 피해자가 특정 콘텐츠를 접하게 만드는 행위가 이에 해당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의사소통을 넘어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불안과 공포를 주는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전제로 처벌 근거를 둔 것이다.

(바)목은 최근 개정을 통해 새로 포함된 조항으로, 흔히 ‘신상털기’나 ‘독싱(doxing)’으로 불리는 행위를 규율한다. 피해자의 개인정보나 위치정보를 무단으로 온라인에 게시하거나, 이를 편집·합성·가공하여 공개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조항은 온라인에서 개인정보 노출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사)목은 사칭 행위를 규율한다. 온라인에서 피해자의 이름이나 사진을 도용하여 마치 그 사람인 것처럼 활동하면서 피해자의 평판을 해치거나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개정된 스톱킹처벌법은 단순히 오프라인에서의 뒤따라다니기, 전화 괴롭힘 등을 넘어서, 온라인 매체에서의 악의적 게시물, 신상 공개, 사칭 행위까지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디지털 기술 발달에 따라 나타나는 새로운 형태의 스톱킹을 반영한 것으로, 피해자의 불안·공포로부터의 보호를 법의 핵심 목적으로 하고 있다. 온라인이라고 해서 괴롭힘이 가볍게 넘어갈 수 없다는 사회적 합의를 반영한 법으로, 디지털 공간에서 상대방에게 불안과 공포를 일으키는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한 취지라고 볼 수 있다.

1) 제2조(정의)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 나. (생략)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라. - 마. (생략)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

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톱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스토킹범죄, 실제로 처벌된 사례들

가. 유튜브에 타인의 신상을 반복해 올리는 행위(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 22. 선고 2024고단4265, 2024고단5580(병합) 판결)

A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A는 2024년에 유튜브 방송을 진행하면서 피해자의 사진과 함께 피해자의 본명, 가명, 과거 및 현재 아이디, 나이, 거주 지역을 반복해서 말하고, 해당 방송을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였다.

법원은 A의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피해자의 개인 정보를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를 통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였다고 판단하여 스토킹범죄를 인정했다. A는 피해자의 범법행위로부터 피고인 또는 유튜브채널 구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나. 피해자의 얼굴을 합성한 영상을 반복적으로 올린 행위(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 2. 19. 선고 2024고단1483 판결)

B는 자신의 유튜브 계정에 춤을 추는 영상 속 여성의 얼굴에 피해자의 얼굴을 합성한 쇼츠 영상을 게시한 것을 비롯해, 약 4개월 동안 총 24회에 걸쳐 다른 동영상 속 인물의 얼굴에 피해자의 얼굴을 합성하여 게시하였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며, 특히 전파성이 큰 매체인 유튜브를 이용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았다.

다. 비방 목적의 글, 사진, 링크를 반복 게시하는 행위(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 2. 14. 선고 2024고단1330 판결)

C는 특정인의 자살이 피해자 때문이라 여기며, 약 1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 총 18회에 걸쳐 유튜브 댓글, 인스타그램 등에 ‘피해자가 망인을 자살로 내몰았고 성범죄자이다’라는 취지의 글, 사진, 링크 등을 반복적으로 게시하였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죄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의 상상적 경합을 인정하여 처벌하였다.

라. 인스타그램 계정을 이용한 피해자 사칭 및 게시물 작성 행위(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12. 12. 선고 2024고단2168 판결)

D는 피해자가 연락을 끊자 피해자의 이름과 사진을 프로필에 게시한 인스타그램 계정을 생성한 후, 57회에 걸쳐 피해자의 이름과 사진을 이용하여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사진 등을 게시하고, 피해자의 실제 계정을 태그하여 게시물 알림이 가도록 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의 이름, 명칭, 사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이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행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일으켰다고 보아 스토킹범죄를 인정했다.

마. 카카오톡 상태메시지에 글을 게시하는 행위(인천지방법원 2023. 8. 31. 선고 2022고단 8541, 2022고정1613(병합)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4. 4. 3. 선고 2023노3671 판결)

E는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에게 고백했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를 비방하고 협박할 목적으로 카카오톡의 ‘멀티프로필’ 기능을 이용했다. 이 기능은 특정 친구에게만 다른 프로필(사진,



상태메시지 등)을 보여주는 기능이다. E는 오직 피해자에게만 보이도록 설정한 멀티프로필의 상태메시지에 피해자를 비난하고 위협하는 내용의 글을 약 한 달 반 동안 총 55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변경하여 게시했다.

1심은 피해자가 스스로 프로필을 클릭해야만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 ‘도달’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다. 행위 당시 법률에는 ‘도달하게 하는 행위’만 규정되어 있었고 ‘나타나게 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았었다.

그러나 2심은 ‘도달’의 의미를 넓게 해석하여, 피해자의 ‘업데이트한 프로필’ 목록에 지속적으로 노출시켜 확인하도록 유도한 행위도 실질적으로 ‘도달’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2023년 법 개정은 새로운 유형 추가가 아닌 기존 해석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다.

4. 명예훼손, 모욕행위와 스토킹범죄의 차이점

가. ‘무엇을 보호하고 어떻게 성립하는가’의 차이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스토킹범죄는 겉보기에는 비슷해 보이지만, 보호하려는 법익에서 분명히 다르다. 명예훼손죄는 개인의 사회적 평가, 즉 외부적 명예를 보호하는 데 초점이 있고,

모욕죄 역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다룬다. 반면 스토킹범죄는 개인의 평온한 생활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이 때문에 범죄 성립 요건에서도 차이가 드러난다. 명예훼손과 모욕은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연성이 있어야 성립하지만, 스토킹범죄는 공연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공개되지 않은 상황이라도 피해자 개인이 불안과 공포를 느낀다면 처벌이 가능하다.

또한 반복성과 지속성의 요건에서도 차이가 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은 일회성 행위로도 성립할 수 있지만, 스토킹범죄는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2호에서 명시하듯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성립한다. 즉, 스토킹범죄는 본질적으로 반복적 괴롭힘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나. 스토킹범죄로 다룰 현실적인 실익

1) 잠정조치 제도의 존재

스토킹처벌법 제9조에 따르면, 법원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② 피해자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③ 전화, 이메일, SNS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④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2023. 7. 11. 개정으로 추가), ⑤ 국가경찰관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와 같은 잠정조치를 내릴 수 있다.

특히 온라인 스토킹의 경우, 전기통신 이용 접근 금지(스토킹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 조치는 가해자가 SNS, 댓글, 메시지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시키므로 효과적이다. 또 만약에 가해자가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위반할 경우, 그 자체로 별개의 범죄가 성립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되므로(스토킹처벌법 제20조 제1항 제2호) 더욱 강력하다고 할 수 있다. 명예훼손으로만 의울할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삭제나 블라인드를 요청할 수 있기는 하나, 이는 가해자의 ‘행위’를 직접 금지하는 것이 아닌 이미 게시된 ‘결과물’을 처리하는 조치여서 차이가 있다. 스토킹범죄로 고소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법원의 잠정조치를 통해 추가적인 위해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고, 가해자가 잠정조치를 위반할 경우 그 자체로 별도의 형사처벌이 되므로 실효성이 높을 수 있다. 또한 이렇게 가해자를 압박한다면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2) 처벌 수위와 절차의 차이

표면적으로 보면 스토킹범죄의 기본 법정형(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은 명예훼손과 비슷하다. 그러나 스토킹범죄에는 흉기 휴대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등 가중처벌 규정이 있어 실제로는 처벌 수위가 더 무겁다. 또한 무엇보다 잠정조치 위반 시 별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제재 효과가 훨씬 크다.

아울러 피해자 의사에 따라 처벌하는지 여부도 달라졌다. 모욕죄는 여전히 친고죄로,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 수사가 가능하다. 명예훼손죄도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반면 스토킹범죄는 2023년 개정으로 더 강력해졌다. 기존에는 반의사불벌죄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면 처벌을 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그 조항이 삭제되어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이 가능하다. 이는 보복 우려 때문에 피해자가 움켜져자먹기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는 상황을 막고,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도록 한 조치다.

3) 명예훼손·모욕으로 다루지 못하는 영역 보완

유튜브나 SNS에 비방이나 모욕적 글을 올린 경우에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지만, 피해자의 신상을 반복적으로 올리거나, 합성 영상을 계속 게시하거나, 피해자를 사칭해 계정을 운영하는 행위는 기존 법리로는 처벌이 모호했다. 이제는 이러한 행위들을 스토킹 범죄로 명확히 다룰 수 있어 피해자 보호가 수월해졌다.

5. 나가며

명예훼손과 모욕은 여전히 온라인 환경에서 가장 널리 적용되는 기본적인 법적 수단이다. 다만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온라인 괴롭힘은 피해자의 평판 침해를 넘어 생활의 안전과 평온까지 위협하는 경우가 많다. 스토킹처벌법은 이러한 공백을 메우는 보완적 제도로 기능하며, 두 제도가 조화를 이루어 함께 적용될 때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 🍁